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일반조건

개 정 2021. 07. 15

제1조(총칙)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 기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公社"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동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계약상대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등록한 설비를 말한다.
7.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대상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SMP(System Marginal Price)"란 계통한계가격으로 대상설비의 전력판매 가격을 말한다.

9. “기준가격”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년도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심의·의결하여 발표하는 의무이행비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0. “상업운전개시일”이란 계약상대자가 전력거래소에 신고한 상업운전개시일을 말한다.
11. “공급가격”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공급인증서 거래 시 적용하는 공급인증서의 가격을 말한다.
12. “불가항력”이라 함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산불, 홍수, 번개, 폭풍우,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유는 화재, 지면강하, 침수 또는 유실 등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
    나. 전쟁, 소요, 민란, 폭동의 행위 또는 민중소요
    다. 파업, 공장폐쇄, 기타 이에 준하는 산업재해
    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판례의 변경 또는 규제기관의 조치가 있는 경우
13. 기타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일반조건, 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발전사업허가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RPS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 RPS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준거법령)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속한 월로부터 20년간(단, 태양광 연계형 ESS의 경우 1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20년간(단, 태양광 연계형 ESS의 경우 15년간)을 거래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거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한다.

제7조(계약단가) ① 이 계약에 적용되는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다음 각 호의 계약방식 중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계약방식에 해당하는 단가로 정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다.
1. “SMP+1REC가격” 계약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정가격-월단위 SMP”을 월 REC 지급단가로 정한다.
2.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정가격-월단위 SMP)÷가중치”를 월 REC지급단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월단위 SMP는 전력판매처에 따라 구분 적용하며, SMP가 고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월 REC지급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1. “한국전력공사”인 경우,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의 월평균 통합가격을 적용한다.
2. “전력거래소”인 경우, 발전기별 실제 월평균 SMP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거래실적증명서를 公社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고정가격은 입찰참여서의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설비확인 및 설비변경 등으로 가중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전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기한 내에「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1MW 미만의 경우, 7개월 이내
2.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2개월 연장
2. 계약상대자가 승인기관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2개월 연장. 단, 개발행위허가 서류 보완 요청 공문 등 인허가 승인기관의 객관적 증빙 제출 시에 인정되며, 자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허가 지연은 인정될 수 없다.
3. 계통접속지연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6개월 연장. 단, 한전 계통접속 지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을 공문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인증서 발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법」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동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대상설비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공급인증서를 제6조의 계약기간 동안 매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행한 공급인증서를 公社에게 매도할 의무가 있다. 단,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상 매매량을 보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설비의 준공이 완료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전설비의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변경계약서를 작성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6조의 계약기간 동안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의 보수, 정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公社에게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불가가 예측이 되는 경우 公社에게 1개월 전에 그 사유 및 중단기간을 통보하기로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상황발생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일시적으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상의 의무는 그 사유발생 기간 동안 면제된다.

⑦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사유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사고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의무이행의 지연사유 및 복구 예상기간
2. 정상적인 업무재개를 위한 조치방안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이행이 가능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 스스로 이행이 가능한 계약상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담당자에게 제12조에 의한 통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公社의 손실을 부담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公社에게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초 계약체결시 연간 공급인증서 예상매매량에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 및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보증금 = 연간 공급인증서 예상매매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 단, 태양광설비의 연간 공급인증서 예상매매량은 이용률 14%를 적용한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고, ESS 연계 시에는 태양광 예상 발전량에서 ESS 방전전력량(배터리용량(MWh)×이용률(70%)×365일)을 차감한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ESS 설비의 연간 공급인증서 예상매매량은 ESS 방전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며, 각 설비로부터 산정된 계약보증금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보증기간 : 이 계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 (ESS 설비 15년간) 단, 본건 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이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늦게 도래할 경우 보증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승인기관의 인·허가 불허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단, 개발행위허가불허 공문 등 인허가 승인기관의 객관적 증빙 제출 시에 인정되며, 자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허가 불허는 인정될 수 없음)
3. 한전 사유로 인한 계통접속 불가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단, 한전의 객관적 증빙 제출 시에만 인정)

②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공급대금 청구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공급대금 청구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2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받은 것에 동의하는 경우 公社는 전자우편 통지 동의서에 명시한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의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받기를 거부하는 등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지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인터넷(www.kdhc.co.kr)에 공고하며 문서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급인증서 인도) 계약상대자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공급인증기관의 사정으로 공급인증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인도일까지 공급인증서를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미인도된 공급인증서 물량에 상응하는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도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인도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단, 계약보증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제15조(공급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公社에게 인도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청구서, 공급인증서, 전력거래소에서 발급하는 정산요청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에 따라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 납부 등 전력거래소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시스템 상의 거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될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환된 과세유형에 맞게 공급대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전환된 과세유형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公社가 손실(국세청이 公社에게 통지한 가산세액을 포함함)을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손실의 청구를 받은 즉시 公社의 손실금액과 부당수취 세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공급대금에 관한 이의제기)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공급대금에 대하여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제15조 제3항의 기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공급대금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월분 공급대금에서 가감하여 정산한다. 이 때 증감된 공급대금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에 체불 등으로 인한 연체료나 이자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5조 제2항에 의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금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오류가 있을 시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금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8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일시적으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상의 의무는 그 사유발생 기간 동안 면제된다.

②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사고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의무이행의 지연사유 및 복구 예상기간
2. 정상적인 업무재개를 위한 조치방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이행이 가능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 스스로 이행이 가능한 계약상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제12조에 의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가중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련법령 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양도·양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고 또한 「전기사업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 및 공급인증서 발급규칙,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설비에 의한 발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며, 제1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반납(보증서의 경우 해지)하고 양수인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i) 양수인으로 하여금 公社와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ii) 당해 양도의 종결 이전에 발생한 公社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양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양수인은 제3항 소정의 변경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자료를 신속히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와 양수인은 본 사업의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변경계약 체결 시 증빙서류 누락 및 추가 서류 요청 불이행에 따른 책임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당해 양수·양도와 관련하여 公社가 손실을 입거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연대하여 公社에게 그 손실을 배상하고 公社를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 또는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에서 정한 인도일 내 계약상대자가 공급인증서의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공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9조에 따른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상호의무 항목 중 1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7.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30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공급인증서 발급규칙 제27조 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기타 입찰공고 내용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인도일 내에 공급인증서를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公社가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공급대금 등 정산하고 쌍방이 채권,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⑥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제재사항을 상호 인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의 도산, 해산, 폐지, 허가취소 등으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8조의 사유로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공급대금 등 정산하고 쌍방이 채권,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 통지가 있은 후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공급대금 등 정산하고 쌍방이 채권,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⑥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제재사항을 상호 인지하여야 한다.

⑦ 전력거래가격 또는 공급인증서의 시장가격의 등락은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잔여계약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1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급가액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전년도의 지급단가에 잔여계약기간 중 매매량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단, 직전년도의 지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대금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 직전 월까지의 지급단가들의 가중평균
2. 대금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한 직전년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③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손해배상액이 제9조의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초과금액의 배상의무를 면하지 않고 여전히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내용은 公社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해당 서면에 전자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의 기재된 내용만이 公社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의 해석과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